

## 2022년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발전 유공 포상 계획

- 오피스이앤씨 경영기획팀 배미아 팀장(02-2055-2023)

### 1 목적

-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로가 있는 1인 창조기업 및 창업지원 전문인력 발굴 및 포상을 통한 창업 의욕 고취 및 1인 창조기업 발전 도모

### 2 개요

- (주 최)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
- (주 관) 서울권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공동(11개\*)

\* 주관기관(11개 기관)

(주더이노베이터, 서울마포구, 서울성북구, 서울스마트미디어센터, (주)오피스이앤씨, (주)오피스허브, (주)중원게임즈, (주)코너스톤웍스, (주)하우투비즈, (사)한국여성벤처협회, (주)한성케이에스콘

- (훈격 및 규모)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 4점
  - (시상일정)
    - 일자 : '22년 11월 1일(화) 서울권 입주기업 성과발표회 행사 시 시상
    - 장소 : 미정
- \* 시상일정 및 장소는 향후 최종 수상자 대상으로 개별안내 예정

### 3 포상대상

- (입주기업)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창업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고 아래 최소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1인 창조기업

<포상추천대상자>

구분	최소자격기준
우수기업(3)	• 서울권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(행사 공고일 이전 기준)

- (지원인력) 1인창조기업 발굴 및 지원 등 창업 활성화와 창업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있고 아래 최소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전담인력

<포상추천대상자>

구분	최소자격기준
지원인력(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센터장, 총괄매니저 및 행정매니저 중 센터 근무경력 최소 2년 이상인 자</li> <li>• 최근 2개년 최종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인 센터에 소속된 자</li> </ul>

### 4 포상심사

- (공고일)
  - 일자 : 2022. 10. 05(수)
  - 거점센터 홈페이지 및 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공문과 함께 발송
- (신청기간) 2022. 10. 05(월) ~ 10. 14(금) 15시까지
- (신청서류) 오피스이앤씨 홈페이지(<http://www.opusbiz.kr/>)에서 다운로드
  - 입주기업 : 추천서, 포상신청서, 포상 동의 및 확인서, (해당 시 추후요청 예정), 항목별 증빙서류 각 1부
  - 지원인력 : 포상신청서, 포상 동의 및 확인서(해당시 추후 요청 예정), 재직증명서 각 1부
- (접수방법) 이메일(opusenc@naver.com) 접수
  - \* 센터별 입주기업 2기업, 지원인력 1명 이내로 추천 요망
- (문의처) 배미아 매니저(02-2055-2023)

### 5 선정 절차

- (기본요건 심사)
  - 정부포상 지침상 추천제한 해당 여부 및 신청자격 보유 등 기본요건에 대한 심사 실시
  - 기본요건 적·부 심사항목 중 “부” 항목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

◆ 주의사항 ◆

○ 포상 신청자(기관)은 당사자 본인 스스로 [붙임1]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포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여야 하며, 미신고시 포상 취소 가능

○ (서면 종합심사)

- 창업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3인의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“공적심의회”를 개최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 종합 심사 실시

○ (포상대상자 확정)

- 종합심사 후 최종순위표 및 추천명부를 작성 후 서울중기청 보고  
-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포상대상 최종 확정

\* 최종 포상 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
## 6 심사기준

○ (심사기준)

구분	평가항목	배점
1인창조 입주기업	(매출액) 구간별 매출액	10
	(고용) 구간별 고용인원	10
	(수출/투자) 구간별 수출 및 투자액 (택1)	5
	(지재권) 구간별 지재권 출원 및 등록 건수	5
	(혁신성) 사업 아이템의 창의성	15
	(타당성) 수익모델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	15
	(시장성) 시장 진출 및 확대 가능성	20
	(수익성) 수익창출 가능성	20
소 계		100
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전문인력	입주기업 지원실적	35
	1인창조기업 지원사업 담당 실적 및 성과	35
	창전문성 및 경력	10
	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실적	20
소 계		100

\* 수출 및 투자유치 금액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않음.

\*\*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건은 등록 1건으로 인정

\*\*\* 정성지표의 배점은 최대점을 넘기지 않는 한에서 자유롭게 배점 가능함.

## 7 공적심의위원회

- (일시) 2022년 10월 19일(수), 14:00~17:00(예정)
- (방법)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심의
- (심의위원회) 분야별 전문가 4인 이내로 구성

## 8 추진일정

○ (향후 일정)

구분	추진내용	일 정	주 관
공고	포상계획 공고	10.05	(주)오피스이앤씨
평가 진행	신청서 접수	10.05~10.14	이메일 접수
	기본요건 및 서면심사	10.17~10.19	공적심의위원회 개최
	서울중기청 보고 및 확정	10.20~10.21	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
시상	시상식	11.01	서울권 1인창조기업지원센터

\*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 정부포상지침에 의한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기준

### 1. 포상기준

#### 가. 수공기간

- 훈장은 15년 이상, 포장은 10년 이상, 대통령·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(단체 포함)에게 수여
- \* 단체의 경우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하며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지 않음

#### 나. 재포상 금지기간 :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

- 정부포상을 받은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, 포장은 5년 이상,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
- 단체 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 표창을 받을 수 없음
-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-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으며, 훈·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
- 정부포상 추천 시 기준일 :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 (다만, 퇴직자는 퇴직일자)

### 2. 포상추천 제한

#### 가.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
#### 나. 형사처분

-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
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- \* 중소기업부장관은 포상신청자의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, 개인 정보제공(활용) 동의서는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로 같음

#### 다. 『상훈법』 제8조 및 『정부 표창 규정』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- \* 단,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

#### 라. 『산업안전보건법』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
-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

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
- '임원'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  - \*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,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(「사업장 등기부등본」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을 통해 확인)
  - \*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  - \*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-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#### 마. 『공정거래관련법』 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) 및 그 임원

-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  - \*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-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- 다만,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#### 바. 『근로기준법』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
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
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
  - \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#### 사. 추천일 당시 『국세기본법』, 『관세법』 또는 『지방세징수법』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

- \* 국세·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e하나로민원(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)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

#### 아. 사회적 물의 등 유발

-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<포상추천제한 조회기관>

- 범죄·수사경력 :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범죄분석담당관실(☎ 02 - 3150 - 1960~61)
  - ※ 전국 경찰관서에서도 조회 가능함
- 산업재해 :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(☎ 044 - 202 - 7693)
- 불공정행위 :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(☎ 044 - 200 - 4127)
- 임금체불주 :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(☎ 044 - 202 - 7537)

# 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

## ■ 포상 후보자

성명			
소속 (주소)		직위(급)	

위 본인은 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,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

-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포상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,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.

※ 특히, 아래의 “신고의무 사항”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포상이 수여된 경우 「상훈법」 제8조 제1호의 “서훈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

■ 신고의무사항

- 경찰·검찰의 조사(수사)를 받게 된 경우
-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
-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된 경우
-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(공무원만 해당)

※ 「상훈법」 제38조(자료제출 및 벌칙)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②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·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.

2022. . . .

성명 (서명)

< 개인정보 제공 동의 >
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- 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)**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,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, 정부포상 결정·취소 시 관보게재,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,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
- (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)**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직업, 소속, 직위 및 직급(계급), 공적내용, 공적요지, 주요경력, 군번(군인의 경우), 국적(외국인의 경우)
- 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)** 서훈기록부는 영구,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,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,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, 상훈 민원신청서는 1년간 처리 및 보유

<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. /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. >